

【별표 20】

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분류(제157조 관련)

분류		대상
국방아키텍처	전군적 아키텍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상호운용성 확보에 활용하기 위한 전군 차원의 정보화 분야 아키텍처
	기관별 아키텍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추진하는 각 기관별 아키텍처
	단위시스템 아키텍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력지원체계 중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기체계 중 특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

※ 전군적 아키텍처는 '국방정보화아키텍처'를 우선 적용함

(www.arms.mil, 아키텍처조회→아키텍처검색→"국방정보화아키텍처' 검색 후 최신 아키텍처 참고)